

청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2487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11,839,210원 및 그 중, 1) 6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9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) 5,839,210원에 대하여는 2024. 9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각 지급하고,

다. 2024. 6. 10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동희

별지